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정 성 수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3년 9월 4일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3년 9월 8일

☐ 상정일자 : 2003년 9월 19일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3. 개정사유

☐ 도로굴착허가 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되나 예외로 긴급 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납부할 수 있었으나 공공사업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 또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 방법을 현실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도로굴착 시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징수하던 원인자 부담금을 공공사업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사업인 경우에도 포함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함(안 제3조 제4항, 제5항)

☐ 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규정 신설(안 제3조의 2)

☐ 보도의 블록·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손케영향폭을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함(안 별표1)

☐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 보도블록과 소형고압 보도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cm에서 4cm로 변경하고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 복구비 면제 대상을 정확히 재정비 함(안 별표2)

☐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문안을 정비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안 별표1,2)

5. 검토의견

- ☐ 도로굴착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근거가 되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2003.6.16 개정 공포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 또한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 ☐ 안 제3조의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에만 적용하던 원인자 부담금 후납제도를 공공사업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까지 확대하고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면서 안 별표2의 간접복구비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원인자부담금산출방법현실화 등은 그동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 시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관계법령 발췌

☐ 도로법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 ① 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식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것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도로의 부속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